

# 발안~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8. 16. 화성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1. 8. 18.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
(2022. 8. 30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(김기두 도로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향남지구와 남양뉴타운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지역간 접근성 및 이동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
- 화성 서·남부권을 연결하는 남북축 도시고속화도로 조기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,
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3조에 의거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사 업 명 : 발안~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
- 사업구간 :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(발안나들목) ~ 남양읍 송림리(송림교차로)
- 사업기간 : 공사기간 4년, 운영기간(개통 후) 40년
- 시설규모 : L=14.5km, . 폭원 20.0m(4차로)
- 총사업비 : 4,436억원(공사비 2,403억원, 보상비1,362억원, 부대비 671억원)  
- 재정지원(시비) : 287억원(보상비)
- 시 행 자 : (주)한라 70%, 대보건설(주) 25%, 이에스아이(주) 5%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- 가.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발안~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,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,
- 나. 화성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요 도로인 서해안 고속도로 및 국도 39호선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이 가중한 여건으로,
- 다. 발안~남양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을 통해 주요 노선의 교통량 해소와 동시에 화성시 주요 거점간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,
- 라. 사업 종점부인 송산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까지 잇는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마. 따라서 2017년 사업 제안되어 제3차 제안공고, 우선협상대상자 선정, 실시협약 공공투자 관리센터 검토 완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8. 16. 화성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1. 8. 18.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
(2022. 8. 30. 원안가결)

## 2. 제안요지설명(유운호 버스혁신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자문기구 및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성비관련 단서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, 화성시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자격에 ‘대중교통운영자의 임직원’ 및 ‘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’을 추가하여,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자문기구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관련 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비 (현행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 단서 삭제)
-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자격 추가 (안 제2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- 가. 본 개정조례안은 자문기구 및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
- 나. 주요내용으로는 자문기구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관련 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남에 따라 삭제하고,

다.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자격에 ‘대중교통운영자의 임직원’ 및 ‘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’ 을 추가하여,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,

라.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